

##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 22개 시·군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3일

경상북도지사

### 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
- 공고기간 : 2026. 2. 23.(월) ~ 2026. 3. 13.(금) (21일간)
- 접수기간 : 2026. 3. 11.(수) ~ 2026. 3. 13.(금) 18:00 (3일간)
  - ※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우수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중복 지원 금지
- 사업기간 :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~ 2026. 11. 30.
- 대상지역 : 경상북도 22개 시·군
- 지원금액 : 사업자별 최대 50백만원
  - 기금지원금의 30% 이상 자부담 필수  
예시) 총 사업비 65백만원 중 기금지원금 50백만원 신청 시, 15백만원 자부담 필수
  - 부가가치세 환급·공제 대상자는 공급가액분만을 지급
  - ※ 4.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예산 운용 및 지원

○ 대상사업 : 지원가능항목과 연계한 여행상품, 관광콘텐츠 개발사업

※ 하기의 지원가능항목 중 1택

① 디지털 전환	AI 기술을 활용한 관광객 맞춤형 관광서비스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관광사업
② 해외관광객	POST-APEC 및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콘텐츠 활용 <u>해외 관광객만을 대상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</u>
③ K-컬처	K-POP, K-콘텐츠(영화, 드라마) K-뷰티, K-푸드를 활용한 경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
④ 관광약자	열린 관광 실현을 위한 <u>관광약자(고령자, 장애인, 영유아 동반, 임산부)</u> 경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
⑤ 생태관광	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<u>산불피해지역 내 자연 친화적</u>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(산불피해지역 : 의성, 안동, 청송, 영덕, 영양)

○ 신청자격 : 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자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

- 관광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\*

\* 정관, 회칙 등에 관광 관련 내용 기재가 되어 있으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관광 사업자

- 중복 사업체(기관 또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)의 경우 최대 1건 지원

※ 동일 사업(체)으로 사업비 중복 신청 또는 수령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

❖ 지원 제외대상

- ▶ 공공기관, 도-시군 출자출연기관 제외
- ▶ 직전 5년 이내(2021~2025년)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에 선정된 사업자
- ▶ 공고일 기준 사업등록 개시일 1년 미만 사업자
- ▶ '26년 중 동일 사업을 위해 정부·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자
- ▶ 최근 5년 이내 횡령 및 부정 지출 등 공공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자
- ▶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

## 2 신청 및 접수

- 신청방법 : 보조사업관리시스템\*을 통한 접수
  - ※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관리시스템 : <https://gctogg.or.kr>
  - 보조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일체(PDF본)를 저장하여 접수신청 메뉴를 통한 접수
  - ※ 회원가입 시 승인 등에 따른 소요 시간 발생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.
- 신청(접수)기간 : 2026. 3. 11.(수) ~ 2026. 3. 13.(금) 18:00 (3일간)
  - 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, 최종 대상으로 선정 시 별도 원본 서류 접수 요청 예정

<b>접수방법</b>	① 보조사업관리시스템 ( <a href="https://gctogg.or.kr">https://gctogg.or.kr</a> )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접수/교부신청 → 접수신청 → 신청 메뉴 클릭 ③ 업체 정보 작성 및 신청서류(PDF본) 첨부 후 → 신청하기 최종 클릭 ④ 접수 확인 방법 : 접수/교부신청 → 접수확인 → 접수내역 확인 ※ 접수 진행단계가 '신청'일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됨
<b>주의사항</b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반드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함 ※ ① 서식별(1호~9호) PDF본, ② 취합본 업로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제출 내용(원본)과 모든 내용 동일해야 함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산편성서 작성 시, 예산편성 기준표 필히 참고하여 예산 편성 요함

### ○ 제출서류

세부구분	서류명	서식(호)	분량한도	접수방법
신청 및 계획서	보조사업 신청서	1	1	보조사업 관리시스템
	단체소개 및 단체실적 증빙	2	2	
	사업개요서	3	1	
	예산편성서	4	1	
	세부사업계획서	8	10-15	
증빙 및 동의서	보조사업 유의사항 확인서	5	1	
	개인정보처리동의서	6	1	
	통합 위임장 (공동대표일 경우)	7	1	
	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	9	1	
	국세·지방세완납증명서* <a href="#">공고일 이후 발급</a>		1	

- 문의처 :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
- 신청문의 : ☎054-740-3903 / 이메일 [gctogg@gmail.com](mailto:gctogg@gmail.com)

○ 지원사업 : 지원가능항목과 연계한 여행상품, 관광콘텐츠 개발사업

※ 하기의 지원가능항목 중 1택

① 디지털 전환	AI 기술을 활용한 관광객 맞춤형 관광서비스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관광사업
② 해외관광객	POST-APEC 및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콘텐츠 활용 <u>해외</u> 관광객만을 대상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
③ K-컬처	K-POP, K-콘텐츠(영화, 드라마) K-뷰티, K-푸드를 활용한 경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
④ 관광약자	열린 관광 실현을 위한 <u>관광약자(고령자, 장애인, 영유아 동반, 임산부)</u> 경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
⑤ 생태관광	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<u>산불피해지역 내 자연 친화적</u>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(산불피해지역 : 의성, 안동, 청송, 영덕, 영양)

○ 선정기준

- 신청사업(자)의 기금지원 사업 취지 · 목적 부합성 확인
- 사업계획의 적정성, 사업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(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)으로 국가,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동일 성격의 사업은 제외

○ 선정시기 : 2026년 4월 중

○ 선정방법 : 1차 서류 심사 → 2차 발표 심사 진행

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· 의결

※ 발표심사 진행 시 해당 사업장 또는 기관의 대표자(실무책임자) 발표 진행

○ 선정결과 :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

※ 선정 사업자 개별 통보 병행. 단, 선정업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참여 1회 제한

○ 추진일정 ※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

목	세목	지출항목 (예)	유의사항
<b>사업진행비</b> ※ 1개 항목당 총사업비 30% 한도	일반용역	기획사/대행사, 영상제작 등	- 사업 주요사항 단순 재교부(재위탁) 금지 - <b>본 보조사업 선정            (타)사업자에게            지출 불가</b> - 단순 사무용품 및 자산취득성 구매 불가 (PC, 제조기기 등) - 1개 업체 지출금액 총 사업비 30%한도
	홍보·마케팅	인쇄물, 온라인홍보 광고비 등	
	제작비	제작비 (기념품 샘플 제작 등)	
	임차료	사업관련 대관료(공연장, 전시장 등), 부대시설이용료, 장비·소품 대여비	
	용품구입비	행사, 이벤트 등을 위한 소모성 용품 구매, 재료비 등	
<b>인건비</b> ※ 인건비 총합 총사업비 20% 한도	신규채용	사업기간 중 신규채용 인력의 급여 인건비 (신규채용인력, 출연료, 심사, 보조인력 등)	- 2026년 최저임금에 준하는 비용까지 사업비로 지원
	단순인건	사무보조, 행사보조 등	- 1인 지급금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시 원천세 신고·납부 - 기존직원 지출 불가 - 월 60시간 초과금지
	전문인력	강의료, 원고료, 통역료 등	- 기존직원 지출 불가
<b>일반관리비</b> ※ 일반관리비 총사업비 5% 한도	사업 추진비	출장비(공무원 여비규정 준용) (대중교통비, 숙박비)	- 유류비 지출불가
	사무용품비	사업수행과 관련된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	- 300,000원 한도
<b>기타 운영비</b>	공공요금 및 제세	공공요금 및 제세 (사업관련 우편비용, 이체수수료 등) 회계검증수수료(필수)	- 사업비에 따른 회계 검증수수료 편성 필수
	복리 후생비	신규채용 인력관련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	

※ 세부 지침은 사업선정 후 교부신청 안내자료 참고

※ 회계검증수수료 산정표 (총사업비 기준, 최종 사업비 금액에 따라 변동 有)

사업비	~3천만원 이하	3천만원 초과 ~ 4천만원이하	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이하	5천만원 초과 ~
수수료 금액	300,000원	400,000원	500,000원	600,000원

-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 규모, 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 지급 가능
- 사업신청자는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 평가지표(정량 중심)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등록(제출)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 있음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
- 심사과정과 평가내용 등 심사자료는 비공개로 함
- 사업선정자는 사업완료 후 지정서식의 사업실적·정산보고서를 2026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- 사업완료 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, 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사업 참여를 1회 제한함
-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 및 자료는 저작권/초상권의 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, 차후에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법적 책임은 사업선정자에 있음
-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, 법령·조례 등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사용하는 자는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사업비 및 부정이익 환수, 제재 부가금(최대 5배) 부과, 명단공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
- 2차 발표심사의 경우, 기관 또는 사업장 대표자(실무책임자) 발표 실시
- 공고내용 및 미공시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해석에 따름

##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예산편성 기본지침

### 1]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적정예산 편성

- 예산은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(실질 소요예산 수립)
-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. 즉, 예비비, 잡비, 기타운영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
  - ※ 각 사업,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단가를 제시하여야 함

### 2] 사업비 집행시 적격 증빙이 가능한 항목만 편성

-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지출이 가능한 항목만 편성
  - 간이계산서 등을 근거로 한 집행 시 불인정 처리
  - 인건비 지출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시 불인정
- ※ 근로계약 시 4대 보험 가입 증빙

### 3]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 편성 (선심성 예산 억제)

- 기금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성격의 경비 편성 불가
  - 시설비, 수선비, 리모델링, 시설부대비, 기자재 등 자본적 경비
  - 기존 인력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,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
-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, 강사료,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- 임차료(버스, 행사장), 식비, 체험비 등 선심성 경비 편성불가,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 처리
- 상금, 상품, 문화상품권 등 현금·현물 관련 보조금 사용 전면 금지
  - 단, 대회·축제와 같은 행사에 소요되는 상금·상품의 경우 별도의 자부담으로 지출 가능(기금 사용 불가), 과다 금액 지출 불가
  - 반드시 수령인의 서명 및 인적정보를 기재한 수령확인서를 정산시 첨부

- 인건비 편성시 가이드라인 철저히 준수 (총사업비 20%내에서 편성 가능)
  - 단순 인건비 및 강사료 등의 경우 원천세 미신고시 집행 불인정
  - 근로계약(신규채용) 인건비의 경우 경상북도 주소지를 가진 인력만 채용 가능하며,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는 편성 불가
- 용역 및 위탁사업시 가이드라인 준수
  - 총사업비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한 지출처에 지출 불가
  - 전자세금계산서, 계약서, 견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 확보
  -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타 사업자에게 사업비 사용 금지

#### 4 공통 기준경비의 예산편성단가 가이드라인 준수

- 강사료, 원고료, 여비, 단순인건비 등 공통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(추후 별도 공지)
- 기타 경비(물품, 용역 등)는 조달청 및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·공표한 가격 또는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 실행가격을 조사·확인한 가격으로 함
- 기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,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름

#### 5 기타 참고사항

- 자부담 예산 집행을 전제로 하여 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, 기금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자부담금 편성
- 특별한 규정 및 공사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
- 사업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
-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(예산집행계획)를 제출하여야 함(선정 후 별도 통보)

- 공공재정환수법 시행(2024.9.27.)에 따른 -

## 「보조사업」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문

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주요내용(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)

#### ○ 부정이익금(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)에 대한 의무적 환수

- 보조사업자의 '허위청구', '과다청구', '목적외사용', '오지급'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

#### ○ 제재부가금(5배 이내) 부과 및 징수

-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
- 환수금 외에 '허위청구'(5배), '과다청구'(3배), '목적외사용'(2배) 부과 및 징수

#### ○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

-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

### □ 협조사항

-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
-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
-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 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